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76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4.2.21일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음.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복잡한 환전 절차로 인한 불편과 추가적인 환전비용 없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3.5일)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기업의 거래 편의를 제약하는 일부 외환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안 제2-6조, 제7-8조, 제7-9조, 제7-36조, 제7-37조)

- 국내 증권투자를 위한 환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원화 부족이 발생하는 등 결제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원화차입 허용

- 국제예탁결제기구(국채통합계좌)를 통해 국채·통안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환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투자자 개인 명의의 원화계정과 국제예탁결제기구의 원화계정 간 송·수금 허용
- 주식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별도 관리은행 선임, 계좌개설이 필요 없도록 규정 명확화

나. 국민·기업 편의 제고를 위한 외환규제 완화

(안 제7-13조, 제7-33조, 제9-6조, 제9-24조)

-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본사의 세금을 국내 과세당국에 대납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대차계약을 할 경우, 자본거래 신고 면제 대상에 추가
-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s) 제도와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3.5일)에 맞춰, 해외에서 취득한 외화증권을 해외에서 매도한 경우 국내 증권사 경유 의무에 대한 특례 규정 등

다. 기타: 정의조항 정비, 입법불비 해결, 통첩폐지 등 법령 정비

(안 제1-2조, 제2-14조, 제3-1조, 제4-3조, 제5-10조, 제7-2조, 제7-8조, 제7-14조, 제7-32조, 제7-45조, 제9-5조, 제10-17조, 제10-23조, 별지 제9-1호 서식)

- 타부처 소관 관련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의 정의를 확대하고, “현지금융” 정의조항의 규정 명확화
-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자의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수행시 자본거래 신고 면제 사유 추가 등 입법불비 해결
-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위원구성 관련 통첩('23.11.14일자)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현행 규정으로 조문화
- 그 외 기타 오타 수정 등 법령 정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kimminju@korea.kr
- 팩스 : 044-215-4819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